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장애인 등록





목차

1. 장애인 등록 준비	3
2. 장애인 등록	4
- 장애인 복지카드	
-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 혜택	
3. 장애 등록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6
- 장애인 복지 급여	
- 돌봄서비스	
- 의료 및 재활지원서비스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병·의원**(장애진단기관)에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③ 발급받은 필수 구비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④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서류를 보내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⑤ 심사가 종료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결과를 전달합니다.

⑥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잊지 말고 확인하기!

- ▶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전**에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록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병원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퇴원 후에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시려면 다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 ▶ 장애 등록 신청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세요.
-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일 경우에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세요.

☐ 복지카드(등록증)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 가능

①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②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1. 장애인등록증



2.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3.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4.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③ 공공요금 감면 혜택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참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유선통신 요금	이동통신 요금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관할 도시가스 지사	해당 통신회사	해당 통신회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원, 공연 및 체육시설 등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철도· 도시철도 요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자동차 판매 인에게 문의)	장애인 등록증 제시		

④ 세제 혜택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참고)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시·군·구청 세무과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자동차 판매인 에게 문의)	관할 세무서 (자동차 판매인 에게 문의)	별도 신청 없음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소득세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국세청 ☎ 126)				관할 세무서

☞ 장애인 복지 급여의 종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① 만 18세 미만일 경우

	장애 아동수당	가정 양육수당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 지원사항 확인 필요)
대상자	*중증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22만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1만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24개월~35개월 : 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 월 10만원
문의	☎ 129 / 보건복지부	☎ 129 / 보건복지부

② 만 18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근거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제도유형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차이점	등록 중증장애인*	등록 경증장애인*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의	☎ 129 / 보건복지부	☎ 129 / 보건복지부

※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 /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장애연금	산업재해 장애급여
근거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제도유형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
차이점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금 지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에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남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급여 지급
대상	초진일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문의	☎ 1355 / 국민연금공단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 잊지 말고 확인하기!

▶ 동일한 장애라도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애등급 체계도와 장애 급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수급 조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장애 등록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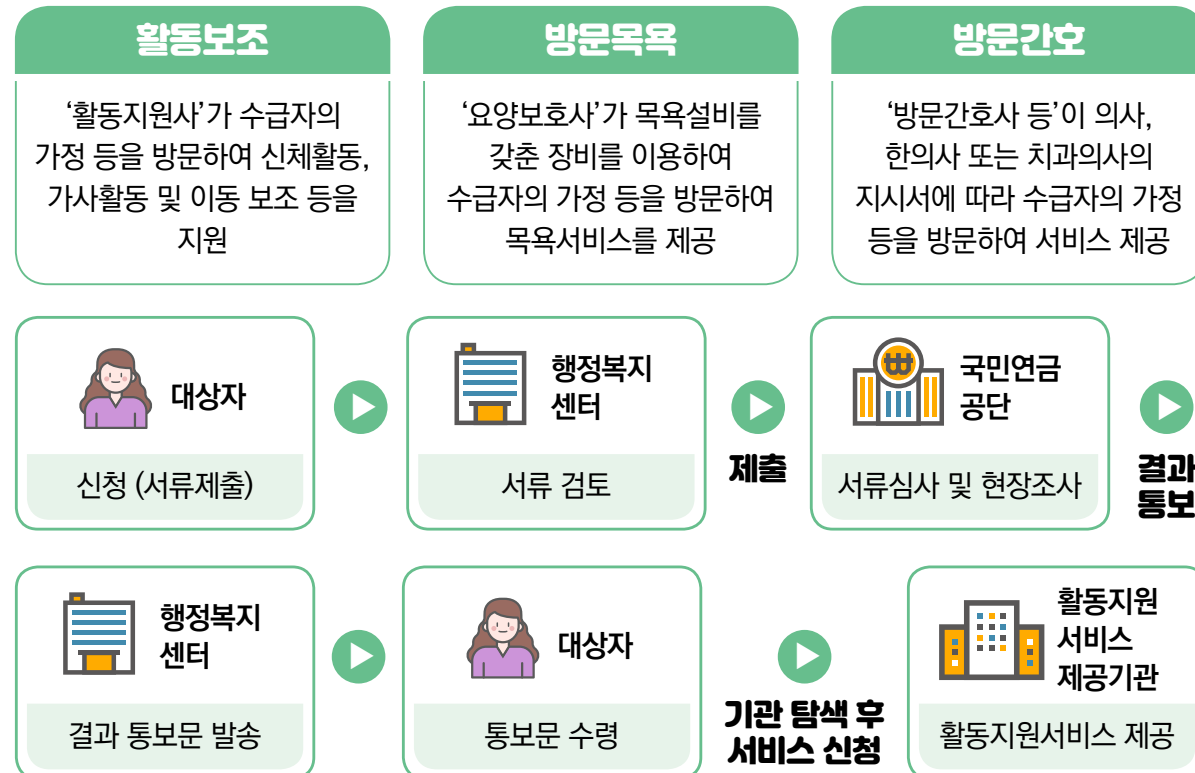
① 돌봄서비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 신규 대상일 경우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 지원시간 :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월 160시간 이내 원칙(코로나19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 파견으로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 단, 유사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와 중복 지원은 어렵습니다.
 - ※ 단,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중복 이용 가능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관 : 국민연금공단)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소득기준 : 무관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여기서 잠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른 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격	사회서비스제도	사회보험제도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자
내용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잊지 말고 확인하기!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전급여 대상이 되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송되는 결과 통보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활동지원서비스 기관 정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 전에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www.ableservice.or.kr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결과 통보문 또는 공단 관할지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www.longtermcare.or.kr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설입소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는 제외)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2 의료 및 재활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참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친화 산부인과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CBR)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및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 지원	장애 맞춤형 검진장비 구비, 검진 보조인력 배치 및 지원 등	여성장애인 맞춤 환경 조성으로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장애인 대상자를 지원 필요도를 분류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진단 및 치료, 의료재활상담 등 진행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지원(의료급여 2종 /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규 등록 및 재판정 시기 도래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진단이 필요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있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의료비 지원내용

- 진찰·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장애인보조기기 등)

●지원 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다음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역사회 재활」에서 만나요!

출처

- 보건복지부[웹사이트]. (2024.09.11.) <http://www.mohw.go.kr>
- 복지로[웹사이트]. (2024.09.11.) <https://www.bokjir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웹사이트]. (2024.09.11.) www.easylaw.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웹사이트]. (2024.09.11.) www.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웹사이트]. (2024.09.11.)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웹사이트]. (2024.09.11.) www.longtermcare.or.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웹사이트]. (2024.09.11.) www.socialservice.or.kr
-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웹사이트]. (2024.09.11.) <https://www.chungbuk.go.kr>
- 장애인복지법[웹사이트] <https://www.law.go.kr>
- 장애인연금법[웹사이트] <https://www.law.go.kr>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웹사이트] <https://www.la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웹사이트] <https://www.law.go.kr>
- 2024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2024. 보건복지부)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24. 보건복지부)
- 202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2024. 보건복지부)
-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024. 보건복지부)
- 202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4.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건강한 삶,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함께합니다.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www.cbrh.or.kr

☎ 유선전화 | 043-269-2700

☎ 휴대전화 | 010-3778-2704

💬 카카오톡 | 🔍 충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